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

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(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)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

가. 주거비

- 1) 인정사유 :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
 -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·부채 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
 -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·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소명하는 때
- 2) 인정범위 :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(단위 : 원) 중 '추가 주거비 인정 한 도'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

(1) 서울특별시의 경우

	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	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1인 가구	372,758	207,706	580,464
2인 가구	672,453	348,177	1,020,630
3인 가구	938,937	447,994	1,386,931
4인 가구	1,114,915	546,931	1,661,846

(2)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

	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	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1인 가구	268,386	207,706	476,092
2인 가구	484,166	348,177	832,343
3인 가구	676,034	447,994	1,124,028
4인 가구	802,740	546,931	1,349,671

(3)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), 안산시, 김포시,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

	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	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1인 가구	141,648	207,706	349,354
2인 가구	255,532	348,177	603,709
3인 가구	356,796	447,994	804,790
4인 가구	423,668	546,931	970,599

(4) 그 밖의 지역인 경우

	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	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
1인 가구	93,190	207,706	300,896
2인 가구	168,114	348,177	516,291
3인 가구	234,734	447,994	682,728
4인 가구	278,729	546,931	825,660

나. 교육비

- 1) 인정사유 :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·납입증명서와 같이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
 -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·진단서·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
- 2) 인정범위 :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(단위 : 원) 중 '추가 교육비 인정 한 도'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
 - (1) 위 ①과 같은 공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

	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¹⁾	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
자녀 1인 기준	150,000	70,671	220,671

(2)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

	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	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
자녀 1인 기준	500,000	70,671	570,671

다만,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

^{1) 2013}년도 보건복지부 공표 4인 가구(미성년자 2인) 최저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4.6%를 참고하여, 4인 가구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141,342원(= 3,072,648원 × 4.6%)을 산출하였고, 이에 따라 자녀 1인에 관하여는 70,671원(= 141,342원 ÷ 2)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음

다. 의료비

- 1) 인정사유 :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· 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
- 2) 인정범위 :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(단위 : 원)에 기 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

	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
1인 가구	49,009
2인 가구	82,154
3인 가구	105,706
4인 가구	129,051

2.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

-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, 다음 ①과 ②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 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
 - ①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
 -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)인 때²⁾

※ 이상과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 은 2022. 1. 1.부터 적용됨. 다만, 위 일자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 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

²⁾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에 관한 기본공제 기준을 참조하였음